

2019회계연도 시흥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시흥시결산검사위원회

목 차

I. 결산검사의견서	5
II.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6
III. 결산검사결과	7
1. 결산검사 총괄 현황	7
가. 시흥시 재정의 개황	7
나. 예산 세입·세출 결산	8
다. 재무제표 결산	13
라. 기금 결산	14
마. 성과보고서 결산	14
2. 그 외 주요 결산	15
가. 채권 및 채무	15
나.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16
다. 세입·세출외현금의 결산	17
IV.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19
1. 총 평	21
2. 세입분야	22
3. 세출분야	28
4. 성과보고분야	31

2019회계연도 시흥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수신 : 시흥시장

2019회계연도 시흥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0년 4월 24일 ~ 5월 13일 (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박 춘 호 (시흥시의회의원)
 - 검 사 위 원 : 김 재 환 (공인회계사)
 - 검 사 위 원 : 조 기 철 (공인회계사)
 - 검 사 위 원 : 신 혜 민 (세 무 사)
 - 검 사 위 원 : 이 슬 기 (세 무 사)

I. 결산검사의견서

시흥시장 귀하

2020년 5월 13일

우리 위원 5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시흥시 의회로부터 시흥시 감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0년 4월 24일부터 2020년 5월 13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9회계연도 시흥시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시흥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 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등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시흥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기금,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시흥시 결산감사위원

대표위원 박 춘 호

위 원 김 재 환

위 원 조 기 철

위 원 신 혜 민

위 원 이 슬 기



II.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결산검사서는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기준(행정안전부)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가 지방회계법,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의 주안 사항으로는 시흥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회계장부, 지출증빙서, 관계법령, 조례 등 법적 근거의 확인을 통한 다각적인 검사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Ⅲ. 결산검사결과

1. 결산검사 총괄 현황

가. 시흥시 재정의 개황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일반회계	세입	885,619,431	957,613,817	1,070,152,702	1,247,081,271	1,387,418,608
	세출	648,779,514	695,799,947	802,437,642	924,357,706	1,067,620,385
	결산상잉여금	236,839,917	261,813,870	267,715,060	322,723,565	319,798,223
기타 특별회계	세입	84,814,069	97,474,090	108,483,320	106,384,121	86,970,722
	세출	17,940,185	24,465,043	31,819,826	40,197,178	42,245,613
	결산상잉여금	66,873,884	73,009,046	76,663,494	66,186,943	44,725,109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938,243,124	1,141,066,292	1,060,275,393	979,493,058	758,620,294
	세출	383,291,070	418,934,944	267,232,993	366,915,609	228,236,861
	결산상 잉여금	554,952,055	722,131,348	793,042,400	612,577,449	530,383,433
총 계	세입(수입)	1,908,676,625	2,196,154,199	2,238,911,415	2,332,958,450	2,233,009,624
	세출(지출)	1,050,010,769	1,139,199,934	1,101,490,461	1,331,470,493	1,338,102,859
	결산상 잉여금	858,665,856	1,056,954,265	1,137,420,954	1,001,487,957	894,906,765

○ 시흥시의 2019회계연도 총 세입은 2,233,010백만원, 총 세출은 1,338,103백만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894,907백만원임.

-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현 연도에 2,824,897원임.

○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2.2%p 높음. 잉여금의 경우 작년에 비해 감소하였음.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

(단위 : 천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 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9년	7,375,191	814,788	6,560,403	2,388,281	2,150,517	237,764	
2018년	8,269,299	2,023,977	6,245,322	1,029,645	857,210	172,435	
증감	(894,108)	(1,209,189)	315,081	1,358,636	1,293,307	65,329	

- 2019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315,081백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5.05%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 차액은 전년대비 65,329백만원(37.9%) 증가함.

나. 예산 세입 · 세출 결산

(1) 총괄

세입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 (C = A-B)
합 계	2,205,955,794	2,233,009,624	1,338,102,859	894,906,765
일 반 회 계	1,333,784,798	1,387,418,608	1,067,620,385	319,798,223
공 기 업 특 별 회 계	786,829,275	758,620,294	228,236,861	530,383,433
기 타 특 별 회 계	85,341,721	86,970,722	42,245,613	44,725,109

회 계 별	이월액(D)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37,122,993	23,092,445	209,485,817	12,589,425	612,616,085
일 반 회 계	27,364,152	18,429,677	158,328,454	12,499,657	103,176,283
공 기 업 특 별 회 계	9,673,841	4,235,014	44,540,096	89,346	471,845,136
기 타 특 별 회 계	85,000	427,754	6,617,267	422	37,594,666

-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233,010백만원으로 예산현액 2,205,956백만원보다 27,054백만원이 더 수납되었음.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60%인 1,338,103백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94,907백만원임.

- 이 중 이월금 269,702백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12,589백만원을 차감한 순세계 잉여금은 612,616백만원임.

(2)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해연도	1,333,784,798	1,467,596,974	1,387,418,608	4,915,652	75,262,714
전 년 도	1,205,832,706	1,328,334,230	1,247,081,271	3,810,412	77,442,547

○ 세입결산 개요

- 수납액 1,387,419백만원은 예산액의 104%로서 53,634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총140,338백만원이 증가하였음. 자체수입(지방세수입,세외수입) 27,266백만원 증가, 이전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보조금 등)이 111,312백만원 증가, 예치금 회수 1,760백만원 증가 등 고른 증가 추세에 기인함.

○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이 : 53,634백만원 초과 수납

- 지방세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18,911백만원 초과 수납
지방세 예산과목 중 주민세 1,675백만원, 재산세 746백만원, 자동차세 11,177백만원, 담배소비세 1,519백만원, 지방소득세 2,163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지난년도 수입목은 1,631백만원 초과 수납되었음.
-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15,106백만원 초과 수납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등)은 5,195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재산매각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9,911백만원 초과 수납.
- 기타 보조금 등 19,617백만원의 초과 수납.

○ 불납결손액 사유별 분석 : 총 4,916백만원(징수결정액 대비 0.3%)

- 지방세 징수결정액 413,208백만원 중 불납결손액 1,720백만원(0.4%)은
 - 사유별로 시효소멸 357백만원, 무재산 1,363백만원으로 구분,
-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107,162백만원 중 불납결손액 3,195백만원(3%)은
 - 사유별로 시효소멸 1,293백만원, 무재산 1,893백만원, 체납처분중지 9백만원으로 구분됨.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불납결손액 해당없음.

○ 미수납액 사유별 분석 : 총 75,263백만원(징수결정액 대비 5.1%)

- 지방세 징수결정액 413,208백만원 중 미수납액 47,347백만원(11.5%)
 - 사유별로 무재산 3,555백만원, 행방불명 581백만원, 납세태만 1,800백만원, 폐업 또는 부도 4,674백만원, 채무자회생법에의한유예 93백만원, 소송 계류 577백만원, 기타 등 36,067백만원으로 구분,
-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107,162백만원 중 미수납액 27,915백만원(26%)
 - 사유별로 무재산 176백만원, 행방불명 34백만원, 납세태만 25,782백만원, 폐업 또는 부도 13백만원, 소송계류 180백만원, 기타 1,730백만원으로 구분됨.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불납결손액 해당없음

(3)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해연도	85,341,721	95,960,503	86,970,722	822,002	8,167,779
전년도	95,325,433	115,444,870	106,384,121	589,966	8,470,784

○ 세입예산 개요

- 기타특별회계에서 수납액 86,971백만원은 예산액의 102%로서 1,629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음.

○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이 : 1,629백만원 초과 수납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1백만원, 자활기금특별회계 105백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140백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337백만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66백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20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월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3,188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0원, 농어업발전특별회계 2백만원이 예산보다 적게 수납됨.

○ 불납결손액 사유별 분석 : 총 822백만원(징수결정액 대비 0.85%)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불납결손액은 총 822백만원으로 사유는 시효소멸임.
- 교통사업특별회계 외 기타특별회계 불납결손액 해당없음.

○ 미수납액 사유별 분석 : 총8,168백만원 (징수결정액 대비 8.5%)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33,071백만원 중 7,806백만원(23.6%)이 납세태만을 사유로 미수납되었으며, 기타 사유로 205백만원이 미수납됨.
- 농어업발전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1,143백만원 중 157백만원(13.7%)이 납세태만을 사유로 미수납됨.
-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외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 해당없음.

(4)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변경	이용· 전용	수입대체 경비
당해연도	1,128,937,951	204,846,847				
전년도	1,030,792,554	175,040,152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명시·사고·계속비)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1,333,784,798	1,067,620,385	205,622,283	10,656,850	49,885,280
1,205,832,706	924,357,706	204,846,848	4,090,502	72,537,650

○ 세출결산 개요

- 예산현액 1,333,785백만원 중 집행잔액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205,622백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10,657백만원, 불용액 49,885백만원으로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 ◆ 보조금 정산잔액 : 15,311백만원
 - ◆ 예산절감액 : 912백만원
 - ◆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 10,663백만원
 - ◆ 낙찰차액 : 1,506백만원
 - ◆ 지출잔액 : 20,747백만원
 - ◆ 예비비 : 746백만원임
- 일반회계 전체 예산현액의 15.4%인 이월액 205,622백만원은 자동차 부품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건립 등 명시이월액 27,364백만원, 장애인론볼경기장 리모델링 등 사고이월액 18,430백만원, 금오로(천왕~광명간) 도로개설공사 등 계속비이월액 159,828백만원(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1,500백만원 포함)임.

(5)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변경	이용· 전용	수입대체 경비
당해연도	73,366,699	11,975,022				
전년도	89,678,612	5,646,821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명시·사고·계속비)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85,341,721	42,245,613	7,130,020	422	35,965,666
95,325,433	40,197,178	11,975,022	1,599	43,151,634

-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 85,342백만원 중 집행잔액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7,130백만원과 불용액 35,966백만원으로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 보조금 정산잔액 : 0.02백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 7백만원
 - 지출잔액 : 1,016백만원
 - 예비비 : 34,942백만원임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포함)

○ 기타특별회계 전체 예산현액의 8.35%인 이월액 7,130백만원은 명시이월액 85백만원, 사고이월액 428백만원과 계속비이월액 6,617백만원임.

다. 재무제표 결산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19	2018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7,375,191,170	8,269,299,266	(894,108,096)	-10.8%
Ⅰ. 유 동 자 산	1,751,772,853	2,806,440,040	(1,054,667,187)	-37.5%
Ⅱ. 투 자 자 산	11,725,525	6,870,970	4,854,555	70.6%
Ⅲ. 일 반 유 형 자 산	466,347,194	459,628,039	6,719,155	1.4%
Ⅳ. 주 민 편 의 시 설	1,768,763,804	1,678,106,242	90,657,562	5.4%
Ⅴ. 사 회 기 반 시 설	3,353,824,974	3,294,881,020	58,943,954	1.7%
Ⅵ. 기 타 비 유 동 자 산	22,756,820	23,372,955	(616,135)	-2.6%
부 채	814,787,709	2,023,977,307	(1,209,189,598)	-59.7%
Ⅰ. 유 동 부 채	804,169,294	2,012,257,361	(1,208,088,067)	-60.0%
Ⅱ. 장 기 차 입 부 채	0	0	0	-
Ⅲ. 기 타 비 유 동 부 채	10,618,415	11,719,946	(1,101,531)	-9.4%
순 자 산	6,560,403,460	6,245,321,959	315,081,501	5.0%
Ⅰ. 고 정 순 자 산	5,610,141,111	5,454,948,771	155,192,340	2.8%
Ⅱ. 특 정 순 자 산	29,525,772	25,159,272	4,366,500	17.3%
Ⅲ. 일 반 순 자 산	920,736,577	765,213,916	155,522,661	20.3%

- 당해연도 말 시흥시의 자산은 7,375,191백만원으로 전년도의 8,269,299백만원 보다 894,108백만원(10.8%)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공영개발특별회계의 분양용지의 감소에 의한 것임.

비유동성 자산의 총액은 5,623,418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160,55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공원, 문화관광시설 및 체육시설등 주민편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임.

-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804,169백만원(98.70%)이고, 기타비유동부채가 10,618백만원(1.30%)으로 비유동부채가 총부채의 1.30%를 차지하고 있음.

지난해에 비해 1,209,189백만원의 부채가 감소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 유동부채는 공영개발특별회계의 분양선수금 감소 등으로 1,208,088백만원 감소하였으며,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감소 등으로 1,101백만원 감소하였음.

라. 기금의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잔액	당기수납	당기지출	기말잔액
계	106,719,832	6,654,282	2,830,241	110,543,873
식품진흥기금	884,698	187,830	222,360	850,168
옥외광고정비기금	2,739,469	342,659	652,449	2,429,679
재난관리기금	15,706,745	3,086,595	1,238,090	17,555,25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173,359	1,535,093	717,342	2,991,110
상수도사업회전기금	44,864,435	788,562		45,652,997
공영개발회전기금	40,351,126	713,543		41,064,669

- 식품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의 본년도말 현재액은 110,544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824백만원 증가하였음.

마. 성과보고서 결산

- 시흥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9 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시흥시는 본 회계연도의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국별로 ‘비전-전략목표-정책사업목표-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부서별 총 124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23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 시흥시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성과지표 232개 중 182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초과달성 27개, 달성 155개), 50개 사업이 목표치에 미달하여 78.4%의 성과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전략목표수 (실국별)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 수(B)	미달성 수	달성률 (B/A)
18	124	232	182	50	78.4

※ 초과달성:130%이상, 달성:100%~130%, 미달성:100% 미만

2. 그 외 주요 결산

가. 채권 및 채무

채권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계	10,524,777	568,515	4,262,458	6,830,834
일반회계	9,242,858	356,933	4,136,958	5,462,833
특별회계	1,281,919	211,582	125,500	1,368,001
공기업특별회계	968	0	0	968
기타특별회계	1,280,951	211,582	125,500	1,367,033

○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830백만원임.

채무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발생액	상환소멸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계	0	0	0	0	0
일반회계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	0	0	0	0	0
기금	0	0	0	0	0

○ 채무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0원임.

나.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3,319,019,620	1,047,440,751	771,846,835	3,594,613,536	
행정 재산	계	2,585,147,211	1,031,363,443	53,375,186	3,563,135,468
	공용재산	750,694,420	6,028,039	33,452,084	723,270,375
	공공용재산	1,696,263,747	1,013,113,395	19,885,506	2,689,491,636
	기업용재산	94,332,946	11,930,009	37,596	106,225,359
	보존용재산	43,856,098	292,000	0	44,148,098
일반 재산	733,872,409	16,077,308	718,471,649	31,478,068	

○ 공유재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594,614백만원임.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 량	1,616	369	6	1,979
금 액	17,031,690	2,354,155	62,000	19,323,845

○ 물품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9,324백만원임.

다. 세입·세출 외 현금의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잔액	당기증가	당기감소	기말잔액
합 계	2,284,825	24,485,149	24,397,866	2,372,108
보증금	195,338	40,981	90,538	145,781
보관금	1,484,070	24,026,030	23,884,208	1,625,892
기 타	605,417	418,138	423,120	600,435

【보관내역】

- 보증금 :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등 146백만원
- 보관금 :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 등 1,626백만원
- 잡종금 : 팩스민원수수료, 가로수원상회복예치금등 600백만원

IV. 시정 및 개선 권고안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1. 총 평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세출 등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 지침 등을 기준으로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결과 2019회계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는 세입분야, 세출분야, 기금분야, 재무제표, 성과보고 분야로 나누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입 분야에서는 세입금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환급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시흥시의 재정력 손실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올바른 결산 관리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둘째, 세출 분야에서는 대규모 협약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구속력 있는 실시협약을 통해 우리 시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일반회계 외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타특별회계 분야도 회계목적에 따른 사업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성과보고서 분야에서는 일상적·반복적 업무는 배제하고 예산대비 행정업무의 객관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조직개편이나 추경편성 등의 변경사항이 성과 계획 및 보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운영성과는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체계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효율적인 행정운영 및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5년간 결산검사 권고사항 중 반복되는 지적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우수한 사례는 널리 알려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에서는 결산검사 결과를 꼼꼼히 점검하여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세입분야

□ 불납결손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 2019년도 세외수입 불납결손액의 갑작스러운 증가

(단위 : 원)

귀속 연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세외수입 불납결손액 (가 =나+다+라+마)	사유별 불납결손			
			채납처분중지 (나)	시효소멸 (다)	무재산 (라)	그 외 사유 (마)
2015	141,992,649,057	1,975,940,010	0	858,904,020	0	1,117,035,990
2016	86,828,292,142	1,532,870,317	0	793,102,307	137,190,980	602,577,030
2017	103,351,155,462	1,591,785,998	781,253,018	785,553,930	0	24,979,050
2018	105,613,689,273	1,449,120,150	0	665,272,670	767,575,200	16,272,280
2019	107,162,255,859	3,195,376,399	9,151,000	1,292,805,748	1,893,419,651	0

- 2019년도 세외수입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1,449,120,150원보다 1,746,256,249원 증가한 3,195,376,399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세외수입 불납결손액의 약 2.2배가 당해 연도 세외수입 불납결손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과거 4년간의 세외수입 불납결손액을 살펴보면 평균액은 1,637,429,119원으로 당해 연도 발생액은 과거 4년간 평균발생액의 약 1.95배 수준으로 갑작스럽게 많은 금액이 불납결손액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율을 살펴보면, 과거 4년간의 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율 평균은 1.5% 입니다. 그러나 당해 연도의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07,162,255,859원이며 이 중 불납결손액은 3,195,376,399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98%가 불납결손된 것으로 과거 4년간 평균율의 약 2배 정도에 달하였습니다.

- 불납결손액의 사유를 살펴보면, 2018년에 시효가 소멸된 세외수입은 665,272,670원이며, 2019년도에 시효가 소멸된 세외수입은 1,292,805,748원으로 약 1.9배에 달하는 시효소멸이 2019년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2019년 시효가 소멸된 세외수입 중 2012년도 이전 부과분은 494,926,928원으로 결손처리 연도가 이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매년 말 결손처리 상황을 검토하여 결손처리 연도가 이월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입금의 결손처분 사유가 시효소멸인 경우에는 시효가 소멸한 해당 연도에 결손 처분하여 기한 내 처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와 더불어 고의 및 장기 체납자의 경우 지속적이고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시간과 예산을 배정하여 주시길 권고 합니다.

□ 행정기관착오로 인한 일반회계 환급금 증가

○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입금 환급액 발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귀속연도	환급액 (가 = 내다라)	사유별 환급액		
		행정기관착오(나)	납세자권리구제(다)	납세자착오 등(라)
2015	3,864,299,702	224,091,752	9,390,350	3,630,817,600
2016	5,717,291,910	603,612,090	83,518,960	5,030,160,860
2017	5,496,670,150	681,088,620	6,250,050	4,809,331,480
2018	7,504,654,290	294,822,940	299,115,180	6,910,716,170
2019	7,931,129,479	482,361,600	351,850,120	7,096,917,759

- 일반회계의 환급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2019년은 2018년도 대비 426,475,189원 증가하였으며, 그 중 행정기관착오로 인한 환급금이 2018년도 대비 187,538,66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행정기관착오로 인한 환급금을 살펴보면 2018년도에는 지방세수입에서 292,374,610원, 세외수입에서 448,550원이 발생하였는데, 2019년도에는 지방세수입에서 355,178,730원, 세외수입에서 127,182,8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행정기관착오로 인한 환급이 급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환급의 원인은 행정기관착오, 납세자의 권리구제, 납세자착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권리구제 및 납세자착오 등으로 인한 환급액은 행정기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납세자권리구제로 인한 환급액은 사전 예측이 어렵고 사건별 판단이 다를 수 있으며, 납세자착오 등은 납세자의 이중납부, 법령개정, 국세경정 등으로 시흥시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이에 반하여 행정기관착오에 의한 환급액은 기부과자 부과와 같은 이중부과, 과세자료 착오, 주소 또는 성명 오기,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등의 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행정기관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 환급액이 커지면 이에 따른 환급이자도 커지게 되며, 환급액은 시흥시의 재정력 손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환급액이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부과시스템 등을 정밀하게 보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금 미수납액 관리 철저

○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구 분	미수납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또는부도	재무회생법에 의한 유예	격리또는영원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 타	
합계	83,430,493	3,731,156	615,272	35,545,243	4,686,579	93,017	983	756,876	3,638	423,337	37,574,393	
일반회계	계	75,262,714	3,731,156	615,272	27,581,810	4,686,579	93,017	983	756,876	3,638	423,337	37,370,047
	지방세	47,347,218	3,555,347	581,409	1,800,081	4,673,908	93,017	983	576,825	3,638	423,337	35,638,674
	세외수입	27,915,495	175,808	33,863	25,781,729	12,671			180,051			1,731,372
특별회계	계	8,167,779			7,963,433							204,346
	세외수입	7,963,433			7,963,433							
	보전수입등	204,346										204,346

- 2019년도 미수납액은 83,430,493천원으로 그 중 납세태만과 기타사유가 전체의 88%를 차지합니다.
-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납세태만은 94%로 특히 특별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 원인은 오로지 납세태만으로 분류되어 있고, 지방세 체납액의 '기타사유'는 75%로 이는 담당자들이 지방세관리프로그램 체납자관리카드에서 체납사유 코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기타'로 지정하고 프로그램 하단에 독려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산서에는 체납사유 코드별로 취합이 되기 때문에 징수담당자들이 체납 독려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고 있어도 이는 담당자만이 볼 수 있어 정보이용자에게는 정확한 정보제공이 어렵습니다.
-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 불능 분은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하여 행정력 낭비 요인을 줄이고,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납세태만에 대해서도 세부원인별로 미수납액이 관리되도록 권고하며, 납세의무 이행과 공평 과세실현을 위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 '기타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 체납사유를 꼭 확인하여 적극적인 징수 활동과 미수납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사업예산 관리 철저

- 보조금 사업예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 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목적이 정해져 시달되는 것으로 시달된 보조금 내시 공문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업비를 집행합니다. 하지만 결산검사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고 보조금을 수령하고도 간주처리를 하지 않아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외수입'으로 계상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회계상 과오납 조치 한 사례가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사업부서	사업명	교부액	수령연도	세입과목	비고	
도비보조금	교통정책과	시흥 방산 공영차고지 설치사업	2,416,000	2018년	그외수입	2019년 과오납처리	
특별조정교부금	미래전략과	환황해경제권 구축지원을 위한 경기해양과학관 조성	2,400,000	2018년		2019년	2020년 과오납 처리예정
		환황해경제권 구축지원을 위한 경기해양과학관 조성	2,400,000				
	건설행정과	정왕동51블록 상업지역 일원 노후도로 정비공사	1,000,000				
		정왕동 서촌상가 일원 노후도로 정비공사	1,000,000				
국비보조금	미래전략과	해양생태과학관 건립지원 사업비	863,000				

- 위와 같이 보조금을 수령하고도 간주처리를 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해 보니 두 가지로 분류되었습니다.
 - 1)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아서 예산편성을 못 하고 있는 경우
 - 미래전략담당관 경기해양과학관 조성사업/해양생태과학관 건립사업
 - 2) 해당 사업부서에서 간주처리 요청을 누락한 경우
 - 교통정책과 방산 공영차고지 설치사업
 - 건설행정과 정왕동 노후도로 정비공사
- 현행 지방재정법상 최종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후에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예산이 교부될 경우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예산입니다.

즉, 간주처리 예산은 편성계획을 기관장 결재를 득하고 예산편성 후 집행이 가능하며, 사후 의회 보고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보조금이 당초 예산액보다 초과 교부되었더라도 보조금 교부결정 공문을 접수하면 즉시 간주처리 절차를 거쳐 예산에 포함 시켜야 합니다.

- 작년 권고사항에도 나왔지만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사업부서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사항이 예산부서로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세입부서에서는 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교부되는 보조금이 있을 경우, 사업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예산편성 여부 확인 및 간주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팀(정책기획관), 회계과, 세정과, 사업부서가 일정기간마다 보조금예산 현황에 대하여 대사하고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전에는 간주처리 절차를 통해서 회계상의 보조금 과오납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금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3. 세출분야

□ 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 관련 ‘구속력 있는 실시협약’ 체결 권고

- 2016.12.28. 해양수산부로부터 선정된 ‘2017년도 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 공모’ 관련, 민간사업자측의 여건미비로 인하여 최초 계획대비 약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보조금이 지급되는 생산유통단지 조성 관련 총사업비 150억원 중 50%인 75억원에 대하여 보조금(국비: 45억원, 지방비: 30억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체결된 계약서 등은 2016.10.31. 체결된 ‘아쿠아 펫 랜드 투자유치 양해각서’ 와 ‘2019.1.3’ 체결된 ‘부속합의서’ 가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해각서(2016.10.31.)>

<부속합의서(2019.1.3.)>

제1조(목적 및 내용)

제1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제2조(협력사항)

제2조(협력사항)

제3조(협약기간)

제3조(보조금 관련)

제4조(비밀유지)

제4조(비밀보장)

제5조(기타)

제5조(효력의 발생)

한편, 2019.12.24. ‘미래전략담당관-7713’ 의 ‘보조금 교부결정서’ 중 ‘7.교부조건’ 과 ‘2017년도 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 공모 계획’ 중 ‘3.2.사업결과 환류’ 에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회수 또는 지원 중단 등의 사업 참여자의 불이익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2020.4.27. 현재 체결된 양해각서와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의 사업시행지침 불이행 등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019.12.24. ‘미래전략담당관-7713’ 의 ‘보조금 교부결정서’ 중 ‘7.교부조건’ 과 ‘2017년도 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 공모 계획’ 중 ‘3.2.사업결과 환류’ 에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회수 또는 지원 중단 등의 사업 참여자의 불이익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바, 동 내용을 참고하여 민간사업자와 구속력 있는 실시협약의 체결을 권고합니다.

□ 시흥시 방산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사업시행자: 시흥에코피아주)에 대한
‘자금재조달’ 권고

- 2013.10.10. 체결된 ‘시흥시 방산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의거 시흥에코피아(주)는 2017.05.18.부터 2037.05.17.까지 20년간 시흥시 방산하수도시설의 운영권을 보유하여 동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12.31. 현재 사업시행자의 타인자본조달금리는 각각 5.1%(차입 원금 - 약 166억원)와 10%(차입 원금 - 약 30억원)로서 2017년부터 이자율 5.1%의 차입금에 대한 원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 한편, 2019.08.20. 시흥시장은 경기도지사에게 ‘민간투자사업 자금재조달 검토결과 제출(정책기획관-12794,2019.8.20.)’ 공문을 통하여 현행 5.1%의 금리를 4.5%의 금리로 낮추는 것을 ‘추진목표’로 하여 ‘2022년 12월 실시협약 변경’을 위하여 ‘2020년 4월까지 자금재조달 연구 용역 완료’를 ‘추진 일정’으로 하였으나, 2020년 4월말 현재 ‘연구 용역’은 발주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2013.10.10. 체결된 ‘시흥시 방산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 시흥에코피아(주)의 타인자본조달금리가 2020년 4월 현재 시중금리(한국은행 기준금리: 0.75%) 대비 높은 것으로 보이고,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295(2019.4.23.) 및 경기도 예산담당관-7397(2019.4.26.)호에서도 자금재조달의 필요성을 기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금재조달(Re-financing)**에 의한 실시협약 변경을 통하여 시의 **재정부담 완화** 추진을 권고합니다.

□ 기타 특별회계 회계 목적에 대한 철저한 검토

- 특별회계 담당자는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게 회계목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목적에 맞게 비용이 사용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합니다.

- 특별회계는 별도의 목적에 따라 회계가 일반회계와 분리되어 기타특별회계로 계상되어 운용 되어지고 있으나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빈번한 교체와 특별회계의 목적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었습니다.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예산이 일반회계의 정책기획관으로 내부거래 된 후 시흥도시공사 사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완료 후 시흥도시공사에서 일반회계의 정책기획관에 정산보고 및 상환한 2018년 미사용 금액이 2019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미수납 되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특별회계의 예산이 일반회계로 이전된 뒤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는 경우 특별회계담당자는 사용내역에 대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대한 사후관리가 미비하게 되고 미사용 잔액의 예산편성에 오류가 생기는 등 특별회계의 사후관리가 미비합니다. 일반회계로 이전해서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특별회계 담당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주고 담당회계의 목적에 대한 담당자의 교육에 보다 충실함으로써 예산이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 시흥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회계담당자와 사업담당자 모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목적에 맞는 투명한 회계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3자와 공동사업의 경우 객관성을 가진 외부 전문가의 회계 검토를 통해 보편적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성과보고서 분야

□ 성과지표 달성을 지속적 감소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필요

- 성과보고서는 재정성과 관리제도의 일부분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성과관리체계의 수립 및 운영 전반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성과보고서 작성을 통해 한해의 재정 운영 및 사업 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 회계연도 환류를 통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 아래 표와 같이 2019회계연도 성과지표 달성률은 78.4%로, 2016년부터의 성과지표 달성률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달성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전체적인 성과지표 달성률 제고 등을 위한 분석 및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분석 및 검토로 다음연도 예산 및 성과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단순한 성과달성도의 측정에만 물러서는 안 되며, 성과달성도와 정책사업 목표 달성도에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하여 적절히 예산을 분배하고 있는지, 또한 지표설정시 특별한 노력 없이 자동 산출되는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등을 검토하여 총괄적인 성과보고서 미달성된 원인뿐만 아니라 초과달성 원인 등의 체계적인 분석 결과를 성과보고서에 담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9회계연도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회계연도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 수(B)	미달성 수	달성률(B/A)
2019	124	232	182	50	78.4
2018	109	206	171	35	83
2017	104	199	173	26	87
2016	99	183	165	18	90

□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성과계획서는 예산의 변경이 있을 시는 수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대조해 본 결과 2019회계연도 예산편성시 제출한 성과계획서는 이후 추경 및 조직개편이 크게 있었음에도 성과계획서를 수정하지 아니하고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이는 앞서 지적한 미달성률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예산이나 사업계획이 변동 되면 이에 맞는 지표를 설정하여 달성도를 측정하여야 하나 당초 지표 대비 이루어지면서 정확한 성과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아울러, 부서의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관심 및 기여도 부족으로 인한 정확도 제고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산의 목적은 정확한 결산으로 다음 회계연도 환류로 재정 운영 성과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음에도 성과보고 작성의 미흡으로 신뢰도 제고가 우려됩니다.

예를 들어,

[시민고충담당관]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8년 달성성과	'19년 달성성과
CS시책 추진(명)	CS친절교육 및 워크숍 참석자	목표	0	250
		실적	0	1435
		달성률(%)	0%	0%
기동처리반 생활불편 민원처리건수(건)	연간 민원처리 건수	목표	480	520
		실적	510	700
		달성률(%)	0%	0%

→ 목표를 달성하였음에도 달성률을 산정하지 않아 0%(미달성)로 작성됨.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8년 달성성과	'19년 달성성과
고충민원 현장조사(50건)	현장조사 횟수	목표	40	50
		실적	50	0
		달성률(%)	0%	0%

→ 19년 달성성과의 실적이 '0' 이지만 이에 대한 성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음.

[환경정책과]

정책사업목표 : 시흥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8년 달성성과	'19년 달성성과
용역 추진 공정율(%)	용역 추진 공정율	목표	-	100
		실적	-	0
		달성률(%)	0%	0%

→ 성과분석에 2019.12월에 연구용역 준공이라고 했지만 달성성과의 실적은 '0'

[대기정책과]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8년 달성성과	'19년 달성성과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건수(건수)	(설치건수/설치 참여업체 건수)X100	목표	0	37개소
		실적	0	37개소
		달성률(%)	0%	0%

→ 목표를 달성하였음에도 달성률을 산정하지 않아 0%(미달성)로 작성됨.

[공원과]

→ 습지 보호활동 역량 강화 교육 운영 횟수 지표 관련 실적이 '0' 이지만, 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음.

[녹지과]

→ 정책사업목표 도시숲 및 녹지 정비 사업 및 유지관리, 안전한 도시숲 힐링 공간 창출 및 산림자원 육성, 안전한 도시숲 힐링 공간 창출 및 산림자원 육성의 총 성과지표 6개 중 1개 지표에 대해서 실적만을 입력하고, 나머지 지표는 실적 조차 입력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떠한 지표도 성과분석 및 단위사업 주요 추진성과 등을 작성하지 아니함.

[위생과]

→ 우수 모범업소 지정률 등의 지표에 대해 실적, 달성률 등 미작성

- 2016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제출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여 의무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육과 관심부족으로 성과보고서 작성에 있어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 추후에는 성과계획서 변동사항에 대한 반영 및 성과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및 관심도 제고 등으로 내실 있는 성과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성과보고에 대한 결산은 추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의 성과보고 비전 및 시 만족 행정 추진 등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때 좀 더 면밀하고 합리적이며, 실현가능한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